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 」(법률 제8423호 전면개정 2007. 05. 11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전면 개정 된 상위법의 내용 및 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「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」를「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로 함.

나. 권리와 의무부담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21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」”를 “「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제1항 및 제1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명 「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」	**제명** 「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
제5조(권리와 의무부담)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**제13조제1항 및 제14조**의 권리와 의무부담 을 허가할 수 있다.	**제5조(권리와 의무부담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** ---------- ----------.